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81 발의연월일: 2024. 12. 26.

발 의 자:김성원·김선교·박성훈

이종배 · 김소희 · 김종양

송석준 · 김태호 · 고동진

정동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, 한국자유총연맹과 함께 범국 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3대 국 민운동단체임. 이 조직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함 께 사회안전망 구축, 공익캠페인 전개, 취약·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으로 조직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 또한 새마을운동조직과 한 국자유총연맹은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, 바르 게살기운동조직은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가 없어 조속히 마련되어 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별도로 회계처리

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도록 하고,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중앙협의회와 하부조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(안 제3조 등).

법률 제 호

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조직)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서울특별시에 중앙회를 두고, 시·도에 시·도협의회를 두며, 시·군·구에 시·군·구협의회 (단, 자치구가 아닌 일반시의 구는 협의회를 새로 설립할 수 없다)를 두고, 읍·면·동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중앙회 또는 시·도협의회, 시·군·구협의회의 산하에 법인, 직장, 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"를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, 보조금, 기부금의 사용·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"로 한다.

③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총연맹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수 있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조세감면 등) ① 정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「조

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.

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조의2(조직) ① 바르게살기운
	동조직은 서울특별시에 중앙회
	를 두고, 시·도에 시·도협의
	<u>회를 두며, 시·군·구에 시·</u>
	<u>군・구협의회(단, 자치구가 아</u>
	<u>닌 일반시의 구는 협의회를 새</u>
	로 설립할 수 없다)를 두고, 읍
	<u>•면 •동에 위원회를 둘 수 있</u>
	<u>다.</u>
	② 중앙회 또는 시·도협의회,
	시・군・구협의회의 산하에 법
	인, 직장, 단체협의회를 둘 수
	<u>있다.</u>
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 ① ~	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 ① ~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는 출
	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
	을 재원으로 총연맹의 다른 회
	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
	적립금을 둘 수 있다.
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
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	정에 따른 출연금, 보조금, 기
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	부금의 사용・관리 및 적립금

으로 정한다.	의 운영에
<u><신 설></u>	제3조의2(조세감면 등) ① 정부는
	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
	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
	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.
	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바르게
	살기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
	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「조세
	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
	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.